

주민청구 조례 개정 청구취지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2항 및 「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 조례 개정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3년 12월 21일

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



1. 청구 조례명 :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청구 대표자
 - 성명 : 김 현 수
 - 주소 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수촌로 36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: 2023. 12. 21.
4. 서명요청기간 : 2023. 12. 21. ~ 2024. 6. 20.
5. 연서 주민 수 : 6,665명 이상
6. 조례 제정 청구취지
 -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어 판매 부스에서 판매하는 음식 가격이 축제 이미지 및 도시 브랜드에 타격을 줄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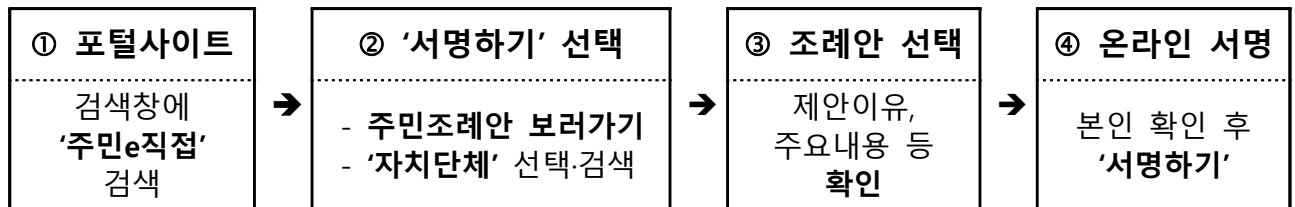
이며(강릉 단오제 및 강원도 지역축제들),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‘착한 가격 캠페인’을 벌이고 있어 이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7. 주요 내용

- 지역축제 평가단의 심사 기준 규정(안 제11조제4항)

8. 전자서명절차 안내

- 전자서명시스템 인터넷주소 : 주민e직접 www.juminegov.go.kr
- PC 또는 모바일 서명 가능



- 전자서명 취소 방법
 - ①~③번 과정은 동일 → ④번 과정에서 ‘서명취소’ 버튼 선택

9. 기타 행정사항

- 본 공고(공표)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사관실 의안팀(☎033-249-5705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조례안 1부. 끝.